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장려금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21. 12.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52조(계약의 원칙과 방법), 고용노동부「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 운영규정」제18조의2(공동훈련센터 평가 및 결과의 활용)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컨소시엄 운영규칙」제16조(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 및 별표 5(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2(성과평가 결과 관련)에 의한 성과평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컨소시엄 성과평가 장려금 지급 업무에 관하여는 진흥원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협약, 진흥원 규정 또는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컨소시엄 성과평가"란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의거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 2. "장려금"이란 공단이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 3. "성과급"이란 공단에서 지급한 장려금 중 직업훈련전담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 4. "사업총괄책임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컨소시엄 사업을 총괄하는 과제 책임자를 말한다.
- 5. "직업훈련전담자(이하 '전담자'라 한다)"는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 또는 경력자로서 컨소시엄 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운영위원회"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5조 및 운영규칙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컨소시엄 성과평가

- 제4조(성과평가 자료 제출) ① 컨소시엄 사업부서는 공단이 공고하는 컨소시엄 성과평가 절차,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컨소시엄 사업부서는 사업수행역량, 사업실적, 성과 등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매년 공단이 공고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려금 지급신청)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공단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본부장 또는 사업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단에 장려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장려금 배분 및 관리

- 제6조(장려금 배분 기준) 장려금은 컨소시엄 운영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① 직업훈련전담자에 대한 성과급
- ② 일반운영비
- ③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제7조(전담자 성과급) ① 성과급은 장려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공단에 등록된 전담자에게 지급한다.
- ② 팀장급 이상 보직자의 경우 성과급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기타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원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 제8조(성과급 지급 시기) 전담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공단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은 이후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전담자 성과급 분배 기준) ① 성과급은 제7조 ①항에 따른 금액에서 전담자의 해당년도 근무기 간에 따라 균등 지급한다.
- ② 단, ①항에 해당하는 퇴직자 및 타부서 전보자의 경우에는 1년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